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장사시설이 2016년 9월 정식 운영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변경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 제10조, 별표 1 ~ 별표 3)

당초 : 구미추모공원 → 변경 : 구미시추모공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미추모공원””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미추모공원”을 “구미시추모공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 제2호”를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묘지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구미시 옥계동 511번지(1,045㎡) 구미시 옥계동 512번지(1,861㎡) 구미시 옥계동 513번지(1,438㎡) 구미시 옥계동 산 5-1번지(14,082㎡) 구미시 옥계동 산 6-1번지(10,413㎡) 구미시 옥계동 산 108번지(3,091㎡)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1번지(17,058㎡)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2번지(11,90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3번지(21,42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4번지(18,248㎡)
봉안시설	구미시 공설송조당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화장시설	구미시 추모공원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 (제9조 관련)

1. 구미시공설묘지 (30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1제 곱 미 터	24,000	기 당 1년	2,000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1제 곱 미 터	24,000	기 당 1년	2,000

※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배액을 가징한다.

2. 구미시공설송조당 (15년간)

(단위: 원)

구분 실별	구미시민			타지역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일 반 실	120,000	80,000	40,000	300,000	220,000	80,000	
무 연 고 실	60,000	40,000	20,000	150,000	110,000	40,000	
외 국 인 실	120,000	80,000	40,000	300,000	220,000	80,000	

3. 구미시추모공원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화 장 시 설	일 반 사 체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유택동산	1구		10,000	10,000	

※ 죽은 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

[별표 3]

구미시추모공원 사용료 관내·관외 구분 (제9조 관련)

구 분	관 내	관 외	비고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인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및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미추모공원”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구미시추모공원”-----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 ----- -----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 구미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과 유택동산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 구미시추모공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제2호 및 제3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제7조제1항제2호 -----

호의 사유로 송조당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안치된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치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
 -- 필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간판석 변경 설치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명칭변경으로 인한 간판석을 수선 설치하기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4,000
간판석 수선공사	14,000 × 1식	14,000

4.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장사시설계 정옥주(054-480-5187)

소관 실 · 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류 은 주
	담 당	권 혁 성
	담 당 자	정 옥 주 (480-5187)